



경기도 프리랜서 대상 공정거래교육

특허법

CONTENTS



01

특허법

02

특허권

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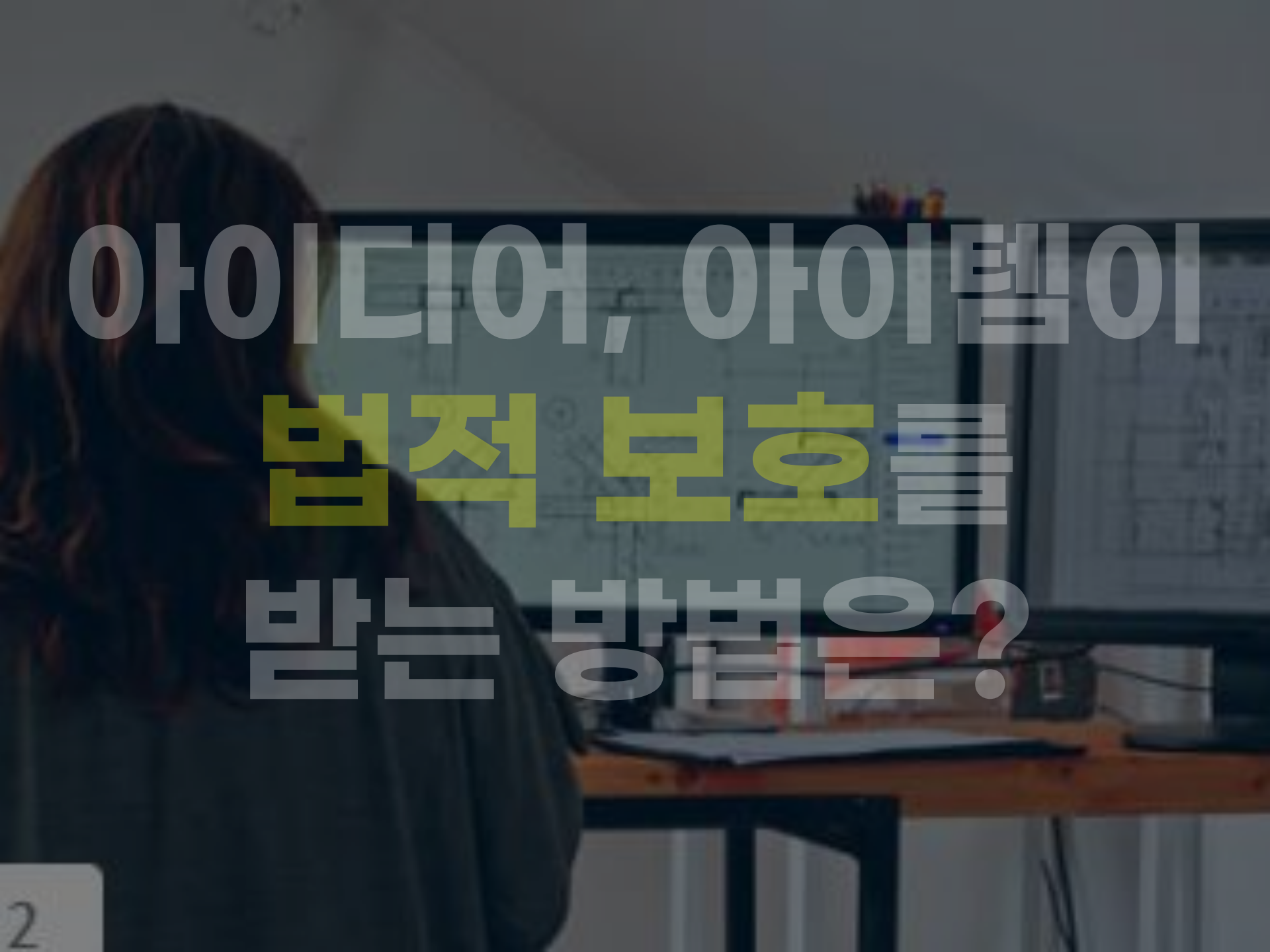
법률적 구제방안

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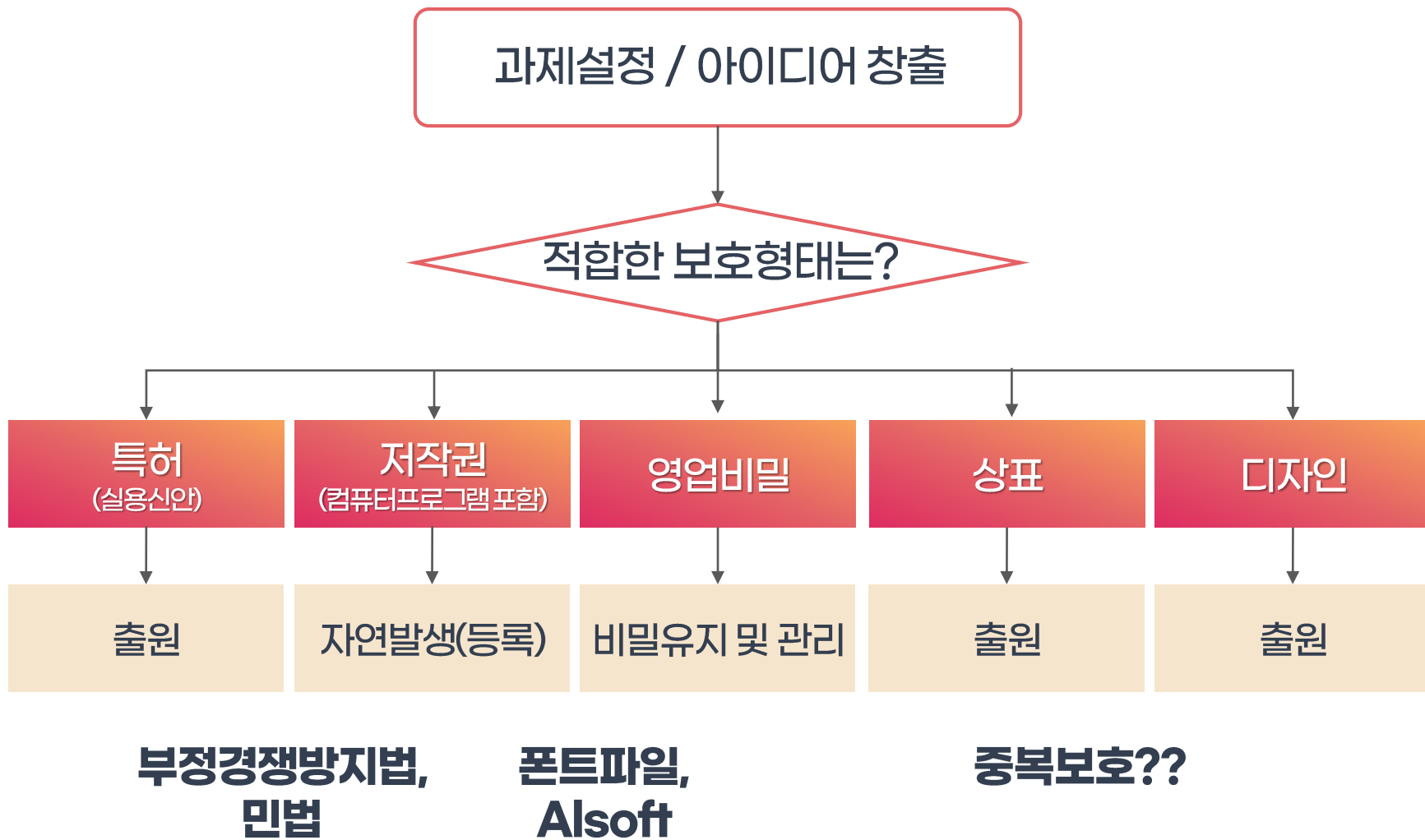


특허법



아이디어, 아이템이 법적 보호를 받는 방법은?

- 적절한 보호수단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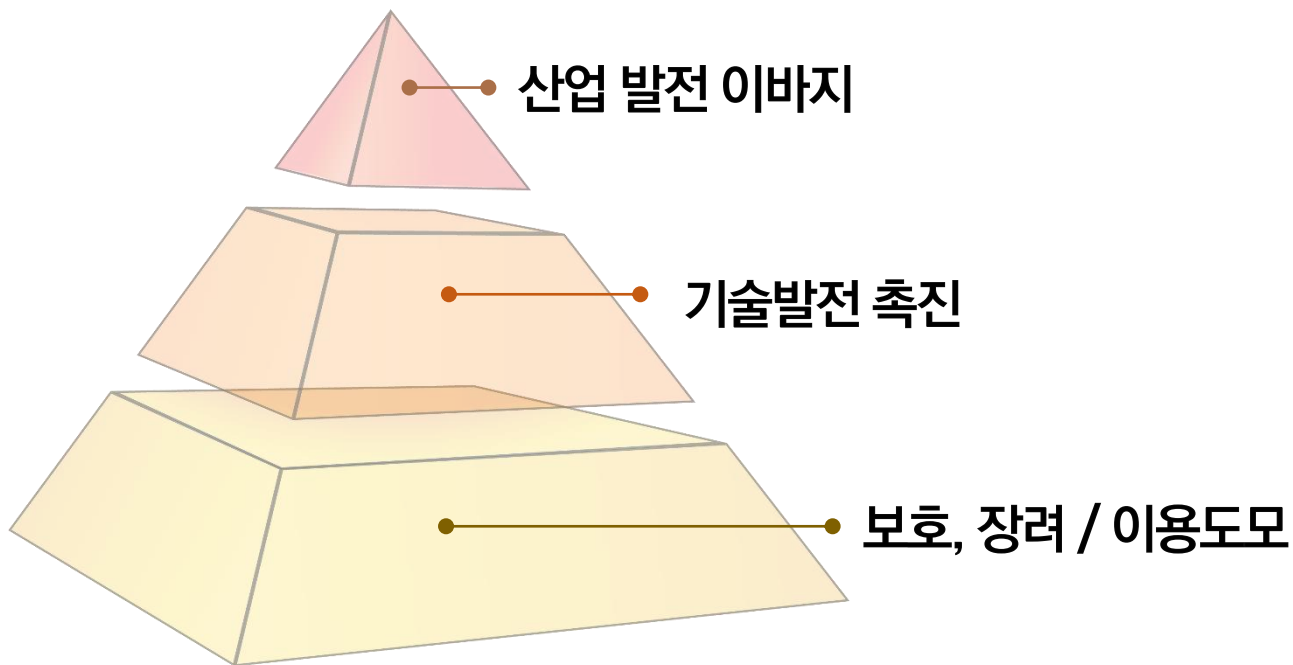


목적

이 법은 **발명을 보호·장려**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(법 제1조).

기술 공개에 대한 권리 부여

강제공개제도 / 특허권 부여



발명이란?

- "발명"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(법 제2조제1호).

구현 수단

-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함 (대법원 2001. 6. 26. 선고 99다50552 판결 등)

특허요건

법 제29조,
제36조,
제42조 등

강제공개

법 제64조제1항

독점권의 부여

법 제94조

주요 개념

- 발명, 진보성, 구성요소완비, 균등론



국내출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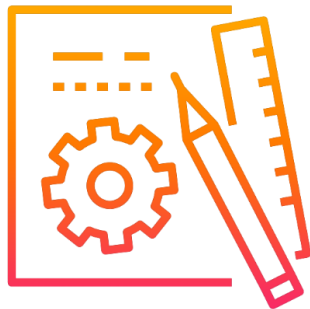
특허출원서

-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
-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
- 발명의 명칭
-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

명세서

- 발명의 명칭
- 도면의 간략한 설명
- 발명의 상세한 설명
- 특허청구범위

도면



요약서



국내특허출원 절차



출원공개제도

출원공개제도

- 특허출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 or 출원인의 신청
- 강제공개제도 vs. 조기공개제도

Why?

- 동일 발명에 대한 중복 연구·중복투자 방지



공개 대상

- 심사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출원 계속 중인 발명
- 공개의 예외

이미 등록
공고 된 것

공서양속/공중위생에
반하는 발명
(시행령 제19조제3항)

국방상 필요에 의해
비밀취급을 요하는 발명
(법 제64조제3항,
제41조제1항)



신규성 / 진보성(특허법 제29조 제1항, 제2항)

- 특허출원 전 국내외에 공지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 및 그(들)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
- 공지 :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
- 주체적 기준 :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
- 신규성 상실의 예외(특허법 제30조)



명세서 기재요건

- 특허청구범위 / 발명의 상세한 설명
- 명확하고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야 함



제29조(특허요건)

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.

1.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(公知)되었거나 공연(公然)히 실시된 발명
2.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(公衆)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

➡ **신규성**

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.

➡ **진보성**



진보성 판단방법

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
청구항 발명을 **쉽게** 발명할 수 있는가?

목적의 특이성

구성의 곤란성

효과의 현저성



공지의 재료 중에서
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

수치범위의
최적화 또는 호적화

유형

균등물(均等物)에
의한 치환

기술의 구체적 적용에
따른 설계변경 등



2



특허권

특허권의 무효 - 무효심판

- ① 심사관의 심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
- ② 이해관계인이 특허등록을 다룰 수 있는 절차 - 특허무효심판
- ③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됨
- ④ 특허법 제133조에 무효사유가 한정적으로 나열되어 있음
- ⑤ 특허등록요건과 대부분 일치
- ⑥ 진보성이 대부분 - 선행기술 확보가 핵심!!



특허권의 효력범위

시간적

특허권 설정등록일
~ 출원일로부터
20년

내용적

특허권자는 업으로
특허발명을 실시할
권리 독점

지역적

속지주의

실시

저작자

그 물건을 생산, 사용, 양도,
대여 또는 수입하거나
그 물건의 양도 또는
대여의 청약(전시)을
하는 행위

방법발명

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
제법발명

그 방법을 사용하거나,
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
물건을 사용, 대여 또는
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
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
행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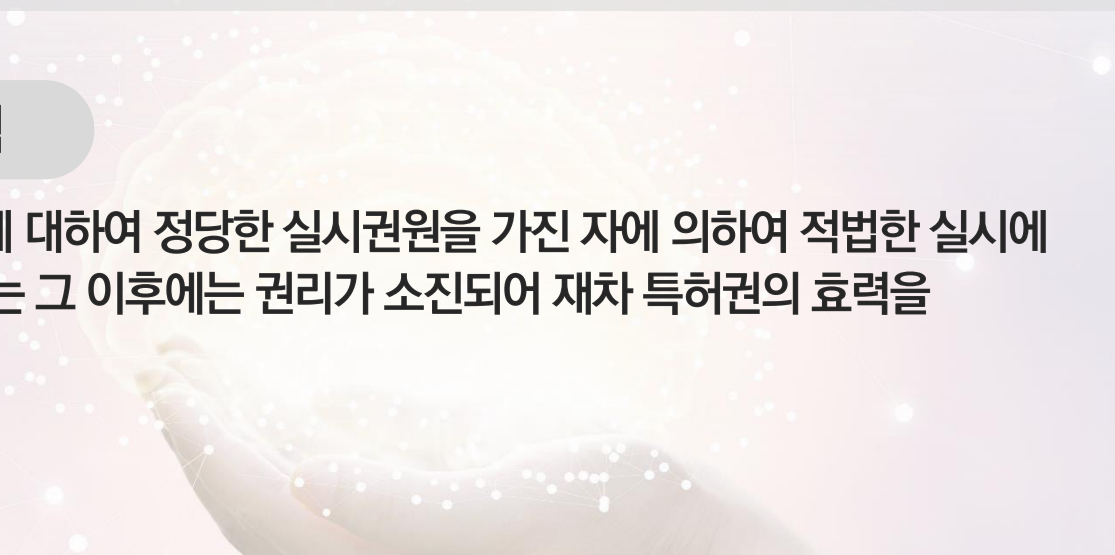
실시행위 독립의 원칙 등

실시행위 독립의 원칙

- 각 실시행위는 서로 독립적 (생산, 사용, 양도, 대여 또는 수입 등)
- 특허권자는 각 실시자에게 독립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

실시행위 독립의 원칙

- 특허권이 보호하는 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실시권원을 가진 자에 의하여 적법한 실시에 관련된 물건 등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진되어 재차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.
- 중고판매가 가능한 이유



특허발명의 보호범위

특허법 제97조(특허발명의 보호범위)

-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.
-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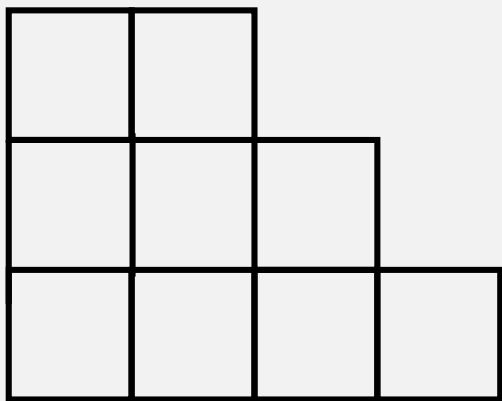
특허청구범위 해석의 방법

-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
- 균등론



구성요소와 권리범위

구성요소의 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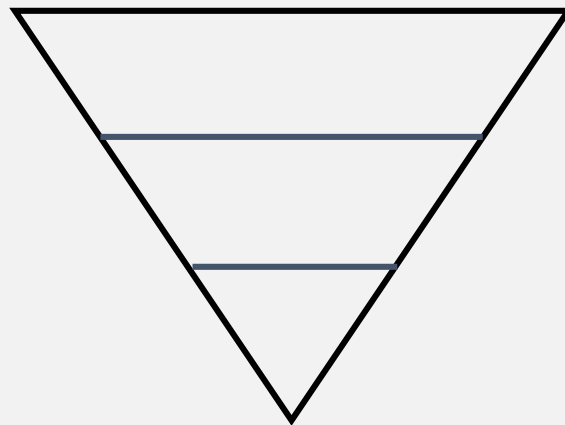
특허 A

특허 B

특허 C



청구범위 광협



특허 A

특허 B

특허 C

특허 A

대한민국 경기도

특허 B

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

특허 C

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



균등론



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보완

-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은 거의 없음
- 특허권자의 실질적 보호



인정요건

- 과제의 해결원리 동일
-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
- 치환의 용이, 자명
- 출원시 공지기술 내지
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
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
해당하지 않을 것(피고발명)
- 출원절차를 통하여 의식적으로
제외된 것이 아닐 것



3

법률적 구제방안

제126조(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)

-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**금지 또는 예방**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(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)의 폐기,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**제거**,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.



제128조(손해배상청구권 등)

-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특허권자의 예상 이익액
- ③ 삭제 <2020. 6. 9.>
- ④ 침해자의 이익액
- ⑤ 실시료 상당액
- ⑦ 재량 손해액
- ⑧ 고의침해 3배 범위 내



침해죄(법제225조)

-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- 반의사불벌죄

허위표시죄(법제228조)

-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